

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제정일	2019. 4. 1
개정일	2023. 1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경리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동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능)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
제 3조 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2. 3. 1)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원, 직원,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으로 하고, 그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22. 3. 1, 2023. 1. 1)

③ 위원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 4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 (회의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1/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6조 (독립성 및 비밀유지) 심의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, 직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7조 (회의록)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사무) 심의회 사무는 사무국 경리과에서 관장한다.

제 9조 (경비)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